

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9-91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. 11. 11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각종 재난 상황과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산화폐 다운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특별지원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안산화폐 다운의 인센티브를 평상시 6%에서 10% 이내로 상향하고, 재난·재해 및 경제 위기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 제2항 및 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 - 입법예고기간 : 2025. 8. 13. ~ 9. 2.(20일간)
- 사. 기타 참고사항
 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 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금액의 10 퍼센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국		기획경제실
입	소상공인지원과장	김 정 삼
안	소비자경제팀장	황 유 경
자	담 당 자 (연락처)	양 정 민 (481-2921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안산화폐 활성화시책) 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평상시 6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주어 판매할 수 있고,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혜택기간에는 10퍼센트 범위에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1. 설·추석 명절</p> <p>2. 어린이날, 시민의 날, 연말</p> <p>3.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자 중 관내 군부대 소속 현역병</p> <p>4. 그 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</p> <p>③ 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경우,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60만원 이하로 한다.</p> <p>④ ~ ⑧ (생략)</p>	<p>제11조(안산화폐 활성화시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장은 안산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③ 재난발생, 경기침체 등 지역경제 위기 상황에 따른 정부 시책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및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④ ~ ⑧ (현행과 같음)</p>